

대구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가단1373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임성우, 이경우, 박한결

피고A

변론 종결2022. 7. 21.

판결 선고2022. 9. 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0. 4.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20. 4. 17. 접수 제50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D은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대출기관	D은행	D은행
보증번호	E	F
보증금액	90,000,000원	9,900,000원
보증일자	2019. 5. 28.	2019. 5. 28.
보증기한	2020. 5. 27.(이후 2021. 5. 27.로 변경)	2020. 5. 27.(이후 2021. 5. 27.로 변경)

나. 위 각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소정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 등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한편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연 8%이고, B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사업운영 중 위 각 약정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21. 10. 18. D은행에 101,365,517원(= 제1약정 대위변제금 91,320,286원 + 제2약정 대위변제금 10,045,231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B가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0. 5. 14.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이 가압류를 함으로 인해 원고에게는 위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의거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위 제1약정과 관련하여, 대위변제 후 13,680,626원을 회수하여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고, 그때부터 위 제1약정의 대위변제잔금은 77,639,660원(= 대위변제금 91,320,286원 - 회수금 13,680,626원)이 되었으며, 위 회수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따라 확정손해금

455,368원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위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제1약정과 관련하여 미수위약금 599,420원이, 위 제2약정과 관련하여 미수위약금 65,930원이 각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각 약정과 관련하여 채권보전을 위해 소외 회사, B의 재산에 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여 대지급금 121,120원이 발생하였다.

바. B는 2020. 4. 17. 자신의 채무가 222,351,000원¹⁾ 인 상태에서 당시 시가 120,000,000원 상당의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원고에게 88,926,729원(= 제1약정 대위변제잔금 77,639,660원 + 제1약정 확정손해금 455,368원 + 제1약정 미수위약금 599,420원 + 제2약정 대위변제금 10,045,231원 + 제2약정 미수위약금 65,930원 + 대지급금 121,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구상금채무가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0. 4. 17.은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전이기는 하나,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위 각 보증보험계약이 이미 성립하여 있었던 점, B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0. 5. 14.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인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로부터 가압류 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해 원고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의거 사전구상권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때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사전구상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와 같이 구상권 또한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B에 대한 구상금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B에게 80,000,000원 대여금 채권이 있어 그 담보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받은 것인바, 이는 정당한 담보설정이라 할 것이어서 그것이 원고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 주장대로 B에게 80,000,000원 대여금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로될 당시 B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달리 책임재산으로 삼을 만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B가 자신의 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제공을 하였다면 이는 B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20. 4.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경로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남근욱

별지

1) I조합 45,640,000원 + J은행(왜관지점) 8,097,000원 + 원고 88,614,000원 + 피고

80,000,000원